

<p>됩니다.</p> <p>4. 결의 및 답변요지 : 생략</p> <p>5. 토론요지 : 생략</p> <p>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13명, 출석위원 8명 전원일치)</p> <p>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p> <p>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p> <hr/>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margin-top: 10px;"> <tr> <td style="width: 20%;">의안 번호</td> <td style="width: 20%; text-align: center;">620</td> <td style="width: 60%; text-align: right;">2000. 7. . 기획경제위원회</td> </tr> </table> <p>1. 심사경과</p> <p>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0년 6월 13일, 서울특별시시장 제출</p> <p>나. 회부일자 : 2000년 6월 15일 회부</p> <p>다. 상정일자 : 제1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2000년 6월 28일 상정, 의결)</p> <p>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기획예산실장 김우석)</p> <p>가. 제안이유 동작소방서 및 직할파출소와 119구조대 시설에 따른 운영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방직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p> <p>나. 주요골자</p> <p><input type="checkbox"/> 소방직공무원 정원 증원 : 99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4,881명 → (개정) 4,980명 ※ 총 계 99명 동작소방서 37명 직할파출소 47명 119구조대 15명 <p>다. 참고사항</p> <p><input type="checkbox"/> 관계법규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p> <p>※ 제21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p><input type="checkbox"/>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없음.</p> <p>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 김동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개정조례안은 동작소방서가 신설되어 2000년 8월 개정하게 됨에 따라 소요인력 	의안 번호	620	2000. 7. . 기획경제위원회	<p>99명을 증원하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 조례 제2조 정원의 총수를 15,661명에서 15,760명으로 하고, 부칙 제2조에 규정된 2000년 7월 31일까지의 정원총수(표1)는 16,369명에서 16,468명으로, 2001년 7월 31일까지의 정원총수(표2)는 16,019명에서 16,118명으로 각각 조정하며, -동 조례 제2조와 부칙 제2조의 표1, 표2의 본청·소방학교·소방서 등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을 각각 4,881명에서 4,980명으로 하는 것으로 <p>○ 신설된 동작소방서는 정원을 109명(본서 37명, 직할파출소 53명, 119구조대 19명)으로 책정하여 99명은 순증원하고 부족한 원중 10명은 타 소방관서에서 보충하는 것으로서 기존 소방서의 평균인력이 138명(본서 61명, 직할파출소 58명, 119구조대 19명)임을 감안할 때 금번 정원조정은 별도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p> <p>4. 결의 및 답변요지 : 생략</p> <p>5. 토론요지 : 생략</p> <p>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13명, 출석위원 8명 전원일치)</p> <p>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p> <p>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p> <hr/>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margin-top: 10px;"> <tr> <td style="width: 20%;">의안 번호</td> <td style="width: 20%; text-align: center;">621</td> <td style="width: 60%; text-align: right;">2000. 7. . 기획경제위원회</td> </tr> </table> <p>1. 심사경과</p> <p>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0년 6월 13일, 서울특별시시장 제출</p> <p>나. 회부일자 : 2000년 6월 15일 회부</p> <p>다. 상정일자 : 제1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2000년 6월 28일 상정, 의결)</p> <p>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기획예산실장 김우석)</p> <p>가. 제안이유 하천법의 전문개정과 공중위생관리법의 제정 및 자동차관리법의 개정 에 따라 신설된</p>	의안 번호	621	2000. 7. . 기획경제위원회
의안 번호	620	2000. 7. . 기획경제위원회					
의안 번호	621	2000. 7. . 기획경제위원회					

사무중 주민편의와 봉사행정 및 능률행정 측면에서 자치구에서 처리함이 합리적인 사무를 신규로 위임하고, 폐지되거나 자치구청장의 사무로 된 업무를 삭제하며, 기타 사무명과 위임근거 조문 등을 법·령의 제·개정 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공중위생관리법의 제정에 따라 이·미용사의 면허 및 면허증 교부 등 사무의 근거법령을 공중위생법에서 공중위생관리법으로 변경하고, 사무처리의 효율성 및 연속성을 고려하여 면허취소사무를 신규로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함.
-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으로 폐지되거나 자치구청장의 사무로 이양된 사무를 삭제하며, 시와 자치구의 공동사무가 된 내용을 관련 규정에 맞도록 정비함.
 - 폐지된 사무(4개) 삭제
 - 자동차등록사항 확인명령과 등록사항 확인표의 교부 및 부착명령
 -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개선명령 및 운행정지 명령
 - 자동차정비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신고처리와 해임명령
 - 차고시설 확보 신고처리
 - 자치구에 권한 이양된 사무(10개) 삭제
 - 자동차 강제처리
 - 이륜차 사용신고 및 번호지정
 - 자동차 구조 및 장치의 변경승인
 - 자동차 점검·정비 명령 및 원상복구 명령과 운행정지 명령 및 임시검사 명령
 - 자동차 관리사업비 등록
 - 결격사유로 인한 등록취소
 - 양도·양수신고와 그 법인의 합병신고 및 휴업·폐업신고
 - 자동차 관리사업 개선명령
 - 자동차 점검·정비책임자 해임명령(매매업 제외)
 -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취소 및 사업의 정지명령
 - 국가, 시·자치구 공동사무에 대한 위임법위 명시(2개 사무)
 - 자동차관리사업의 보고명령 및 검사 : 시 사무를 위임받은 경우에 한하여 명령 및 검사권 위임

- 위반행위 단속 등에 관한 사무 : 시 사무를 위임받은 사무에 한하여 단속권 위임
 - 하천법의 전문개정에 맞도록 사무명 및 위임근거 조항을 변경하고, 하천대장의 작성·보관 및 등본의 교부와 열람사무 등 11개 사무를 신규로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며, 법령의 개정으로 제도가 폐지되거나 자치구청장의 사무로 된 하천수익자부담금 부과·징수 업무 등 3개 사무를 삭제함. (안 별표 건설국 치수과란)
 - 신규위임사무(11개 사무)
 - 하천대장의 작성·보관 및 등본의 교부와 열람 등
 - 하천부속물의 관리·유지보수 등
 - 하천유수의 사용·관리
 - 비관리청의 하천공사 준공인가 및 준공인가에 필요한 검사
 - 점용료 등의 감면 및 이에 따르는 처분
 - 하천의 부담금·점용료·사용료·변상금 기타납부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
 - 과오납된 부담금·점용료·사용료·변상금 기타의 납부금의 반환 등
 - 하천의 사용금지에 관한 사항
 - 하천공사에 필요한 토지 등의 수용·사용 등에 관한 사항
 -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의 청문 실시
 - 과태료의 부과·징수
 - 제도가 폐지되거나 자치구청장의 권한으로 된 사무 삭제(3개 사무)
 - 하천수익자 부담금의 부과·징수
 - 실효된 허가의 효력 회복 등의 조치
 - 공유수면 관리에 관한 사무
 - 사무명 및 근거조문 등의 변경(18개 사무)
 - 허가 또는 승인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승계 등에 대한 신고의 수리 사무 등
- ※개정내역 총괄표

구 분	계	신규위임	사무삭제	근거조문 등 변경
계	50	12	17	21
공중위생관리법	2	1		1

구 분	계	신규위임	사무삭제	근거조문 등 변경
자동차관리법	16		14	2
하 천 법	32	11	3	18

다. 참고사항

□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95조

※ 제95조(사무의 위임 등) ①(생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무소, 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③~④ (생략)

□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 김동수)

□ 본 개정조례안은 하천법의 전문개정('99. 8. 9), 공중위생관리법의 제정('99. 8. 9), 자동차관리법의 개정('99. 4. 15)에 따라 신설된 사무중 주민편의와 능률행정구현 측면에서 자치구에 위임함이 합리적인 사무를 신규로 위임하고, 폐지되거나 자치구 고유사무로 변경된 내용을 삭제하여 현행 법령의 제·개정에 맞도록 정비하는 것으로서

○ 공중위생법이 공중위생관리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사무의 근거법령을 수정하고 면허취소사무를 업무처리의 효율성과 연속성을 고려하여 신규로 자치구에 위임하고자 함이며,

○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으로 폐지되거나 자치구 고유사무로 이양된 사무를 삭제하며, 시와 자치구의 공동사무로 된 자동차관리사업의 보고명령 및 검사와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 등에 관한 사무의 한계를 정하며,

○ 하천법의 전문개정에 따라 변경된 사무명과 위임근거를 변경하고 하천대장의 열람사무 등 11개 사무를 자치구에서 처리함이 민원편익증진에 효율적인 사무를 신규로 위임하고 자치구 고유사무가 된 하천수익자부담금 부과·징수 납부 등 3개 사무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13명, 출석위원 8명 전원일치)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622
----------	-----

2000. 7. .
기획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0년 6월 13일, 서울특별시시장 제출
- 나. 회부일자 : 2000년 6월 15일 회부
- 다. 상정일자 : 제1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2000년 6월 28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기획예산실장 김우석)

가. 제안이유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치하는 강남자원회수시설 및 강남주민편익시설의 관리·운영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고자 하는 시설
 - 시설명 : 강남자원회수시설·강남주민편익시설
 - 위치 : 강남구 일원동 4-5번지 일대
 - 규모
 - 자원회수시설 : 1일 900톤 쓰레기 소각·처리
 - 주민편익시설
 - 면적 : 6,511㎡
 - 용도 : 수영장, 헬스장, 에어로빅장, 탁구장, 강당 등
 - 개원시기 : 주민들과 협의 완료후 개원에 정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95조